# 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 입안계획서

#### 1. 행정규칙명

□ 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」(관세청고시 제2022-17호, '22. 5. 6.)

### 2. 개정사유

- □ 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」(이하 "FTA관세법 시행규칙")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
- □ 「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 왕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」(이하 "캄보디아와의 협정")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반영

### 3. 주요 개정내용

- □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 적정 여부 심사 물품 지정 및 세부 절차 규정(§10, §17, §17의2)
  - 관세청장이 세율차가 큰 물품 등을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 적정 여부 심사 대상 물품\*(이하 "사전 협정관세 심사 물품")으로 지정・ 해제할 수 있도록 기준・절차 마련
    - \*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 적정 여부 심사가 부적당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수입신고수리 전 심사가 가능하도록 FTA관세법 시행규칙 개정(제6조제1항제3호 신설, '22.7.5.)
  - 사전 협정관세 심사 물품에 대한 수입자 **제출서류**, 세관장의 **심사** 기준, 신고수리전 반출 및 원산지조사 전환 등 제반 절차 규정

- □ 캄보디아와의 협정에 규정된 원산지증명서의 **선적 후 발급, 재발급** 및 **정정발급 절차**를 고시에 반영(§28, §34, §35, 별표3)
- 4. 규제대상 여부: "해당 없음"
- 5.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: "붙임"
- 6. 시행 일자 : 2022. 00. 00.

## 7. 의견제출 방법

- o 제출기한: 2022. 11. 14. 까지(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)
- 당자: 김진선 사무관(042-481-3215)심성훈 주무관(042-481-3206)
- 제출방법: 이메일(sim307307@korea.kr)